

(2018. 5. 19 시행) 지방직 9급 기출문제 [행정법(B책형) 해설]

[이 상 현 선생님]

제일고시학원 본점(충남대앞)중앙로점 www.okpass.com

<총평>

전통적으로 지방직 시험은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최근 시험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시험이라고 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업무상 행정법 지식이 점점 더 중요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박스형 문제가 많았지만 보기가 4개씩이어서 전체적인 지문의 길이는 비슷하였습니다. 다만 판례와 이론을 결합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어서 단순히 판례만 암기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수험생 입장에서는 80점을 넘기기 힘들겠지만 정답이 되는 지문이 확실했다는 점에서 90점 이상을 획득하는 수험생도 있을 겁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조정점수 제도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는 과목이 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 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분 시가 아닌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서는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와 관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③ 신뢰보호원칙에서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 유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국외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상담에 응하여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 봉사차원에서 현역입영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면 그것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

[정답] ①

- ① 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처분 시의 법령에 근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지연하다가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상대방 신뢰보호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신청 시 법령에 따른다.

문 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한 경우와 구별되어야 한다.
- ② 재량행위에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③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그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 ④ 부담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③

- ③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그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즉 갱신기간으로 해석된다.
- ① 행정행위의 효과제한을 법령이 직접 명시한 것은 법정 부관으로서 부관과 구별된다.
- ② 재량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이 가능하다.
- ④ 부담은 부담의 이행여부를 불문하고 주된 행정행위가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그 불이행은 철회사유가 될 뿐이다.

문 3.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
- ②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 ③ 부과관청이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④

- ④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에 법원은 초과한 부분만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① 행정상 제재는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
- ② 대법원은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은 법규명령으로 본다. 시행령에 있는 [별표]가 이에 해당한다.
- ③ 과징금은 처분 당시의 자료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하고,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를 이유로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관련판례>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므로,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02.5.28. 2000두6121).

문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 ② 불기소처분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된다면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 ③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④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③

- ③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면 공개하여야 한다.

문 5.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ㄴ. 「국세기본법」상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과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부과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 ㄷ.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 ㄹ. 국세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고, 취소의 효력은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관계없이 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④

- ㄱ. (x) : 행정행위의 철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다.
- ㄴ. (x) : 침익적 행위의 취소행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원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상속세부과처분은 침익적 행위이므로 그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을 다시 하여야 소생시킬 수 있다.
- ㄷ. (o) : 판례는 위반차량의 운전가능성이 없으면 일부 취소한다. 그러나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전부취소하는 경향이다.
- ㄹ. (o) : 취소는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하므로 소급효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권취소의 효과에 대해서는 장래효가 원칙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문 6.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취소소송의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②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③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 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그 행정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졌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후행 행정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쟁송기간 경과 후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정답] ②

- ②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후의 집행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무효로 본다.

문 7.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는 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처분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만 다룰 수 있을 뿐이지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는 함께 주장하여 다룰 수 없다.
- ③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①

- ① 대법원은 재처분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② 증액경정처분만 대상이 되므로 증액경정사유 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룰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 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룰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3.4.18. 전원합의체).

- ③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④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제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자신의 토지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 8.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하천점용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여 허가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속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위법한 점용허가를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 ③ 하천점용허가에 조건인 부관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점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미치는 것으로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③

- ③ 조건은 독립성이 없어서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① 하천점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재량행위이다.
- ②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처분청 스스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④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문 9.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최종발표와 그에 따라 그 유가족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 ② 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임면 권한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히무효에 해당한다.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만이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그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로 본다.

[정답] ②

- ② 의원면직처분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수동적 행위이므로 무권한자가 수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의원면직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문 10.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甲은 자동차로 좌로 굽은 내리막 국도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중 커브 길에서 앞선 차량을 무리 하게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중상해를 입었다.
- (나) 乙은 자동차로 겨울철 눈이 내린 직후에 산간지역에 위치한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에 생긴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

- ① (가)와 (나) 사례에서 만약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비록 그 사고의 원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甲과 乙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② (나) 사례에서 乙은 산악지역의 특성상 빙판길 위험 경고나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었다면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미설치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
- ③ (가) 사례에서 만약 반대편 갓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면 甲이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므로 그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가)와 (나) 사례에서 국가가 甲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위 도로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정답] ①

- ①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다라도 영조물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② 위험 경고나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가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 ③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요건도 검토해야 한다.
- ④ 영조물의 하자는 상대적 안전성으로 충분하고 절대적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문 11.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부과된 가산금의 징수를 다투는 소송
- ② 행정편의를 위하여 사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다투는 소송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 ④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정답] ④

- ④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문 12. 행정소송과 그 피고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대통령의 검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법무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국토 교통부차관이 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취소소송 - 국토교통부차관
 ㄷ. 헌법재판소장이 소속직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ㄹ.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서울특별시장

- ① $\neg, \perp$ ② $\sqsubset, \sqsupset$ ③ $\neg, \sqsubset, \sqsupset$ ④ $\neg, \perp, \sqsubset, \sqsupset$

[정답] ③

- ㄱ. (o) : 대통령의 감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므로 법무부장관이다.
- ㄴ. (x) :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청을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 ㄷ. (o) : 헌법재판소장이 소속직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 ㄹ. (o) :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수임청인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문 1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식품 조사처리업 영업을 하고 있던 중 乙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계약은 하자있는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乙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서 乙에게는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甲과 乙의 영업양도계약이 무효라면 위 신고수리처분도 무효이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甲의 영업허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 ④ 甲은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③

- ③ 양도인의 허가가 취소되면 양수인이 승계할 권리가 소멸하므로 甲의 영업허가처분이 취소되면 乙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甲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문 14. 「행정조사기본법」 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행정기관은 그 열람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규범으로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정답] ④

- ④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의 범위에 행정기관 이외에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① 중복조사의 예외사유는 위법이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열람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부고발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8조(조사대상의 선정) ③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열람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내부고발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③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규범에 해당하지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조사기본법>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15.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 ② 행정처분의 이유제시가 아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추완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늦어도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행해져야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 ③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 ④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어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청이 그 이유제시의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정답] ①

- ① 하자의 치유는 쟁송 제기 이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 입장이다.

문 16.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과 제3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기하는 경우의 행정심판절차 및 청구기간을 직접 알려야 한다.
- ㄴ.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제3자는 당해 행정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때 참가인인 제3자는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 ㄷ.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중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ㄹ.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자신의 신청 또는 행정청의 직권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여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③

- ㄱ. (x) : 행정심판 고지는 서면에 의한 처분에 한정되지 않으며, 직권고지의 상대방은 처분의 상대방에 한정된다.
- ㄴ. (o) : 제3자는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판결의 효력을 받으므로 참가할 필요가 있다.
- ㄷ. (o) : 행정소송법은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제3자의 재심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다.
- ㄹ. (o)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스스로 행정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므로 이 지문은 상대적인 지문이다.

문 17. 사업주 甲에게 고용된 종업원 乙이 영업행위 중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의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에 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乙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② 甲의 처벌을 규정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乙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甲만 처벌할 수 없다.
- ③ 행위자 외에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규정의 해석에 의해 과실 있는 사업주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乙 외에 甲도 처벌할 수 있다.
- ④ 위 위반행위에 대해 내려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면, 당초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③

- ③ 과실범을 처벌할 때 명문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절충설이 통설, 판례이므로 명문이 없는 경우에도 관계규정의 해석에 의해 과실 있는 사업주를 처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 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②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乙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甲의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할 수 있다.
- ④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서로 성질과 목적이 다르므로 병과할 수 있다.

문 18.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②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히 무효이다.
- ④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한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정답] ②

- ② 공매통지는 공매처분의 절차적 요건이므로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문 19. 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②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도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면 배출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③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면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④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정답] ④

-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중간적 단계의 처분이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 ① 반복되는 소송을 막기 위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②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할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③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므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 20.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의 존재여부는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하므로 원고적격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 ② 취소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책임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는 점이다.
- ③ 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에 근거를 둔 법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②

- ② 취소소송은 본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공익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심리주의에 의하여 보충한다.
-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의 존재여부는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한다는 점에서 대상적격의 문제로 파악하기도 하고, 원고적격의 문제로 보기도 한다.
- ③ 취소소송도 기본적으로 처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④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처분의 적법성 일반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다른 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